

진료기록열람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본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열람및 사본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작성 시 환자 본인과 신청인의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된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와 의료법 제21조 2항 기록열람에 의거하여 진료기록열람및 사본 발급에 대한 근거자료인 구비서류로 보관됩니다.

수임인 (위임 받는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input type="checkbox"/> 위의 작성한 개인정보를 진료기록열람및 사본 발급 위임장에 사용됨을 동의합니다.			
위임인 (위임 하는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input type="checkbox"/> 위의 작성한 개인정보를 진료기록열람및 사본 발급 위임장에 사용됨을 동의합니다.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진료기록열람및 사본 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같은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 청 병 원 장